

정 관 (제정 1980. 12. 1.)

개정	1983.	1.	24.
	1984.	3.	6.
	1985.	3.	18.
	1987.	4.	2.
	1988.	4.	7.
	1989.	4.	24.
	1990.	4.	5.
	1994.	5.	9.
	1995.	12.	1.
	1996.	4.	8.
	1997.	4.	1.
	2000.	4.	21.
	2001.	7.	1.
	2004.	3.	20.
	2012.	4.	1.
	2015.	4.	1.
	2017.	6.	5.
	2019.	4.	4.
	2020.	3.	1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Korea Saemaul Undong Center'로 하고 약칭은 'KSC'로 한다.

제2조(목적) 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발전, 나아가 지구촌 공동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중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4조(사업) ①중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회원 및 회원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및 조정

3. 국내·외 새마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국제협력
5. 국내·외 새마을분야 전문가 양성
6. 새마을지도자 후생복지 사업 및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포상
7.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와 이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비 등 지급·지원
8.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②중앙회(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에서는 전항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대사업
2. 자연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풍력 전력발전 및 판매사업
3.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5조(정치관여 금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하부조직 및 부설기관

제6조(하부조직) ①중앙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시·군·구(비자치구를 제외하고 시·도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지회는 필요할 때에는 지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읍·면·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

③이북5도민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이북5도지부를 둘 수 있다.

④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지부·지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중앙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7조(부설기관) ①중앙회는 새마을교육과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연수원 및 대학원과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과 연구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장 회원 및 회원단체

제8조(조직) ①중앙회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립된 법인인 새마을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중양회는 제1항의 회원 외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단체를 회원단체로 한다.

1. 새마을지도자중양협의회
2. 새마을부녀회중양연합회
3.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양협의회
4. 새마을문고중양회
5. 새마을금고중양회

③전항 제1호 내지 제4호 회원단체의 회칙·정관 제·개정 시에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전항 제1호 내지 제4호 회원단체장의 취임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중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단체 외에 새마을운동에 관련 있는 사회·문화·종교 등 직능단체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⑥회원 및 회원단체(이하 “회원단체 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회원단체 등의 권리·의무) ①회원단체 등은 중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 발언권·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2. 중양회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중양회의 운영 또는 사업 등에의 참여
3. 회원단체 등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양회의 협조 및 지원 요청

②회원단체 등은 중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중양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제10조(회원단체 등의 제명) 회원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중양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3. 중양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제11조(준회원단체의 운영) ①중앙회는 제8조제5항의 직능단체를 정식 회원단체로 가입시키기 위한 전단계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②중앙회는 준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새마을명칭·표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준회원단체의 운영, 업무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2조(총회) ①중앙회에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②총회의 대의원의 정수는 400인 이내로 한다.

③대의원의 자격,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도별 본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연도별 기본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회원단체의 가입과 회원 및 회원단체 제명과 재가입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회장은 전시,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신설 2020. 3. 11>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①총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6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당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이하 이 장에서“이사”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기본사업계획 중 일부 사업의 변경, 폐지 및 신규사업의 의결
2. 예산·결산 및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하부조직의 설치·폐지·합병·분할·변경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지부·지회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의 결정
9.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임 원 등

제2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 ①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내
5. 감사 2인

②제1항 각 호 규정의 임원 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회장과 사무총장은 상근으로 하며 이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부회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원단체 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 제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회원단체 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시·도새마을회 회장 및 사계전문인사 중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총회가 선임한다.

⑤임원의 자격,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②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일에 종료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된다.

③부회장의 임기는 그 본직의 임기에 의한다.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삭 제

제2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정관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중앙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해임)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선거관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새마을사업을 병자하거나 새마을조직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였을 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②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회원단체 등과 하부조직의 임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단체 또는 조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임원의 퇴임 및 사임) ①선임된 임원이 임기 중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규정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②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임서를 회장, 당해 지부회장 또는 지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지부회장, 지회회장의 사임서는 당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③제2항의 사임서는 제출됨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회장은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회장은 새마을운동의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종류) 중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 소유 동산 및 부동산
2. 새마을기금 <개정 2004.3.20>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5. 기타 수입금

제29조(재산의 구분) ①중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새마을기금 <개정 2004.3.20>
3. 이사회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금) 새마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3.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재산 및 출연금
2.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31조(운영재원) 중앙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2.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3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3조(회계연도) 중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의 설치) ①중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지부 및 지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5조(사무총장 및 직원) ①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지부 사무처장은 지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지부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지부사무국 직원과 관할 지회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한다.

③지회 사무국장은 지회장 및 지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지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 지부·지회 임원과 이사회

제36조(지부·지회의 임원) ①지부 및 지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각각 두며 비상근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5인 이내
4. 감사 2인

②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제1항 각호 규정의 임원 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7조(임원의 선임) ①지부회장은 지부임원과 관할 지회·새마을회 회장의 연석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회장이 승인하며, 지회회장은 지회임원과 관할 회원단체 동회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지부회장 또는 시·도새마을회회장이 승인한다.

②부회장은 당해 회원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지부이사는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원단체 시·도회장이 추천하는 각2인, 제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회원단체 시·도회장이 추천하는 각1인과 시·군·구지회·새마을회 회장 및 지역인사 중에서 지부회장이 임명하며, 지회이사는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원단체 시·군·구회장이 추천하는 각2인, 제8조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회원단체 시·군·구회장이 추천하는 각1인과 지역인사 중에서 지회회장이 임명한다.

④감사는 당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 ①지부·지회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지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②부회장의 임기는 그 본직의 임기에 의한다.

③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일에 종료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된다.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삭 제

제39조(임원의 직무) ①지부·지회 회장은 당해 지부 또는 지회를 대표하며 당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지부·지회 회장을 보좌하며 지부·지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당해 지부·지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부·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중앙회 또는 지부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당해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0조(지부·지회 이사회) ①지부·지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부·지회 이사회를 둔다.

②지부·지회 이사회는 지부·지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각각 구성한다.

③지부·지회 이사회는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0장 시도, 시군구새마을회

제41조(법인의 설립과 명칭) ①지부 및 지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 명칭은 ‘(시도, 시군구)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라 한다)로 한다.

②지부·지회가 법인으로 설립코자할 때에는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부·지회가 법인으로 설립됨과 동시에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된 해당 분사무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중앙회와 새마을회와의 관계) ①중앙회와 새마을회는 동일한 이념, 정신, 목표, 상징물을 가지고,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조직이다.

②새마을회는 설립과 동시에 중앙회의 회원이 되고 그 대표자는 중앙회 총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③회장은 새마을운동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마을회의 정관예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새마을회는 정관예 중 명칭, 목적, 사업 중 새마을운동 추진과 새마을교육, 운영원칙, 중앙회와의 관계,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재산의 관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중앙회 또는 중앙회 회원단체 정관 및 회칙의 개정으로 임기가 변경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새마을회가 정관을 변경할 시에는 회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⑥새마을회는 중앙회가 시행하는 전국적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⑦중앙회 총회에서 제명된 새마을회는 임원 전원을 교체한 후 회원으로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조(중앙회의 업무 등의 지원) ①중앙회는 새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경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중앙회의 각종 규정은 새마을회가 자체 규정을 제정할 때 까지 준용할 수 있고 회장은 새마을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새마을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회원단체) 새마을회는 중앙회에 준하는 회원단체를 둘 수 있고 회원단체는 새마을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회원단체의 자율적 활동은 보장된다.

제11장 보 칙

제45조(정관개정) 중앙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새마을명칭·표장 등의 사용금지) 이 정관에 의한 새마을조직이 아니면 새마을명칭·표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중앙회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새마을명칭·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해산) 중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법령준용 및 규정의 제정 등) ①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소속기관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총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소속기관의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선임 또는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명칭변경)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과 규칙의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산하조직에 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에 의해서 제정된 제규정과 규칙의 지회사무소와 사무장에 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 시행당시 시·군·구지회에 재직 중인 사무장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5년 2월 28일 이전에 선임된 지부회장의 임기는 1995년 3월 31일까지로, 1995년 1월 31일 이전에 선임된 지회회장의 임기는 1995년 2월 28일까지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비자치구 지회의 폐지) 일반시의 구(비자치구)에 설치된 지회는 1995년 12월 3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회장이 임용하여 지부 및 지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지부 및 지회가 법인으로 설립되더라도 임용권은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무총장과 1997년 2월말 또는 3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지부 및 지회임원의 임기는 구정관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구정관에 의해 제정된 규정·규칙은 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관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하부조직 등에 대한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해 설치된 하부조직 및 부설기관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와 이들 하급조직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관련규정 및 규칙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산하조직의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보며, 지부·지회 운영위원회는 지부·지회 이사회로 운영위원은 이사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정관에 의하여 제정된 관련규정 및 규칙 중 "새마을국민기금"은 "새마을기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시·도, 시·군·구새마을회정관예 제2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시·도, 시·군·구새마을회정관예 제7조 <시·군·구새마을회 경우> 제1항 제5호 “새마을금고연합회○○시(군·구)협의회 회원”을 “새마을금고중앙회○○시(군·구)협의회 회원”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5호 “새마을금고연합회○○도(특별, 광역시)<○○시(군·구)>(지부)협의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지역본부<○○시(군·구)협의회>”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정관의 제7조제1항의 대학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